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세심사소위를 거쳐 6월 30일쯤 최종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내용을 게재한다.

의안번호	1868
------	------

제출연월일 : 2005. 5. 26

제 출 자 :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와 53퍼센트에서 85퍼센트와 50퍼센트에 이르도록 인상 또는 인하하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인하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消費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나목중 “리터당 460원”을 “리터당 454원”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리터당 231원”을 “리터당 201원”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리터당 20원”을 “리터당 17원”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킬로그램당 704원”을 “킬로그램당 360원”으로 하며, 동호아목중 “리터당 169원”을 “리터당 147원”으로 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중 “廢礦地域開發支

援에관한特別法”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食品衛生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關稅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畜產物加工處理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藥事法”을 “약사법”으로, “食品衛生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酒稅法”을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 제4조 단서 · 제9조제3항 · 제10조제2항 및 동조제4항중 “關稅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嬰幼兒保育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중 “國民體育振興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廢礦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호 및 동조제4호중 “觀光振興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중 “消費者保護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4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 징수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중 “租稅犯處罰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租稅犯處罰節次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294호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

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단위	적용기간 및 세율	
		2005.7.1 ~ 2006.6.30	2006.7.1 ~ 2007.6.30
제1조제2항제4호 나목 해당물품	리터당	365원	404원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해당물품	리터당	178원	201원
제1조제2항제4호 라목 해당물품	리터당	15원	17원
제1조제2항제4호 바목 해당물품	킬로그램당	360원	360원
제1조제2항제4호 아목 해당물품	리터당	130원	147원

④(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第1條(課稅對象과 稅率) ① (생 략)</p> <p>②特別消費稅를 賦課할 物品(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다음 각목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數量에 당해 각목의 稅率를 적용한다.</p> <p>가. (생 략)</p> <p>나. 軽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460원</p> <p>다. 燈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231원</p> <p>라. 重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20원</p> <p>마. (생 략)</p> <p>바. 石油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704원</p> <p>사. (생 략)</p> <p>아. 石油製品외의 物品을 製造하는 과정에서 副產物로 생산되는 油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69원</p> <p>③ ~ ⑪ (생 략)</p>	<p>第1條(課稅對象과 稅率)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1. ~ 3. (현행과 같음)</p> <p>4.-----</p> <p>가. (현행과 같음)</p> <p>나.-----</p> <p>리터당 454원</p> <p>다.-----</p> <p>리터당 201원</p> <p>라.-----</p> <p>리터당 17원</p> <p>마. (현행과 같음)</p> <p>바.-----</p> <p>----- 킬로그램당 360원</p> <p>사. (현행과 같음)</p> <p>아.-----</p> <p>-----리터당 147원</p> <p>③ ~ ⑪ (현행과 같음)</p>